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원4 김생환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7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과정은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일자리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며, 일자리위원회 심의·자문사항에 ‘컨설팅과 모니터링’,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의 평가 및 관리’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